

의안번호	2219037
의 퇴 인	박대출의원
회 답 일	2026.06.17.
추계번호	26E267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7년 14억 원 등 2027~2029년간 총 42억원(연평균 1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46조의8)	-14	-14	-14	-42	-1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6조의8(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*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※ (주요 내용) 벤처기업 또는 과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(7년 이내)의 주주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보유 주식의 30% 이상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의 50% 이상을 벤처투자조합 등에 재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,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-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6조의8 (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을 반영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
- 세수효과는 최근의 평균 감면액 수준이 추계기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함
 - 매각대상기업 주주의 벤처기업 재투자 규모, 해당 주주의 양도소득세 실효 세율 수준 등에 따라 세수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, 자료 등의 부재로 이를 반영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2~2024년 연평균 14억원 수준
 - 조세지출액은 2022년 12억원에서 2023년 15억원으로 확대되었으나 2024년에는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실적을 보임

[표 2]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감면 실적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	연평균
조세지출액	12	15	15	14

주: 대한민국 정부, 연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에 따라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소득세수는 2027년 14억원 등 2027~2029년 총 42억원(연평균 1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최근의 감면 추세(연평균 14억원)가 추계기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46조의8)	-14	-14	-14	-42	-14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